



2022. 5.

2022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목 차



I. 추진개요	1
① 추진배경	1
② 지난해 추진성과 및 보완할 점	2
II.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4
① `22년도 적극행정 추진여건	4
② 우리 도 적극행정 추진방향	5
III. 올해의 적극행정 추진계획	6
①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조성	6
②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3
③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	16
④ 소극행정 타파	24
⑤ 참여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28
IV. 향후계획 및 관련 예산	34

I

추진 개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I

추진배경

-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MZ세대 공무원 대량 유입,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디지털 경제전환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공직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변화
 - 특히 도민의 삶의 모습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달라졌고 일상회복으로의 움직임에 따라 사회는 시시각각 움직임
-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현안의 발생에 대응해야 하나, 정립되어있는 법이나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에 따른 이례 발생
 - 이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온 고질적인 민원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이 필수적인 상황
- 기존 관례·선례를 벗어나 단순 행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절실

**▶ 적극행정 대두 4년차를 맞아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도민들이 생활권에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도출 필요**

< 주요 추진 근거 >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21. 7. 27.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21.12.16.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22.3., 행정안전부)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21.04.30.시행)

II | 지난해 추진성과 및 보완할 점

1 추진성과

○ (체계·기반 수립) `21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위원회 5회* 운영, 도내 13개 공공기관 대상 적극행정 운영점검 등

* 적극행정 중점과제 4건 심사 및 선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및 의결(5대 분야, 24개 세부 과제),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의견제시 제도

○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 및 부서추천·주민추천 등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4명* 선정

* 우수사례 경진대회 14명(상장 수여), 부서추천 11명, 주민추천 1명, 소방본부 BEST WORKER 8명 → **34명 전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특별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20명 부여)

대표사례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 '갯보드' (충청남도 구조구급과)

- 갯벌에서 구조대원이 요구조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장비

※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제도 이용) 사전컨설팅 73건 처리 및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의결 1건*,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 3건 조치

* 적극행정 위원회 의견제시(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구급이송서비스 도입)

○ (문화확산) 내부직원 대상 적극행정 릴레이 추천제 시행*, IPTV 및 사이버강의를 이용한 적극행정 교육 2회 실시, 영상·카드뉴스·사례집 등 다양한 적극행정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부

* '2주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는 내용으로 총 26명 선정(행정포털 게시, 부상 전달)

○ (전년도 중점과제 추진결과)

구분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	<p>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추진</p> <p>↳ 충남돌봄교실 5개소 연장,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2개소, 최대 126백만원) 등</p>
충남형 디지털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추진	<p>도 소재 비대면·디지털 분야 기업과 도내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 직무역량 교육 등 지원</p> <p>↳ 직무 경험을 위한 인건비, 비대면·디지털 기술 직무교육비 등 지원(100명, 도내 83개사)</p>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 고도화	<p>진단검사·격리·치료 등 코로나19 확산 신속 대응</p> <p>↳ 취약시설 종사자 974천건 선제적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에 보호복, 소독약품 등 적기 지원(38개소, 10종 70만개)</p>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강화	<p>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시책 운영</p> <p>↳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대상 4,775억원 융자지원, 충남형 지역화폐 1조 4천억원 발행, 충남형 배달앱 운영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p>

2 반성 및 보완

- (직원 인식 부족 등) 적극행정에 대한 도내 공무원의 인식이 부족하고 각종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실제 이용도 및 참여 미흡

➡ 충남형 적극행정 제도 정비 및 직원대상 홍보 강화 필요

- (도민 체감 참여 저조) 중점과제 선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추천, 적극행정 국민신청(‘21.7)등 다양한 도민 참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신청·참여 건수 저조

➡ 일상에서 도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과제 및 입체적 접근 방법 발굴 필요

II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I '22년도 적극행정 추진여건

1 충남의 적극행정 현황

※ '22.04.29.~05.03. 도 행정포털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실시) 직원 대상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도 및 체감도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 내용	분석결과
<p>귀하는 평소 적극행정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p> <p>■ 매우 잘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보통이다 ■ 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p>	<p>○ 적극행정 제도에 대해 알고있는 직원(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이 55.5%로 절반 이상 되며, 알지 못하는 직원(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8.8%로 그 수가 매우 적음</p> <p>⇒ 차별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방안 도입</p>
<p>우리 도는 적극행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까?</p> <p>■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p>	<p>○ 충청남도의 적극행정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50%로 절반, 보통으로 여기는 비율이 40%,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비율(아니다, 매우아니다)가 10%가량 측정됨</p> <p>⇒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동기 부여</p>
<p>우리 도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실제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p>	<p>○ 우리 도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실제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는 입장(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절반 가까이(45%) 됨</p> <p>○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경우 '답변의 불명확성, 적용 요건의 불분명성'을 이유로 제기함</p> <p>⇒ 명확한 제도 안내, 구체적인 답변 제공</p>
<p>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p> <p>■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p>	<p>○ 우리 도 우수공무원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매우만족, 만족)이 47.8%이고 불만족 하는 비율(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13.4%로 나타남</p> <p>○ 불만족의 사유로 든 이유 중 '우수공무원을 뽑는 경로와 기회가 부족하다'가 가장 큼</p> <p>⇒ 우수공무원 선정 기회 확대 등</p>

2 중점 추진사항 및 개선방향

-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 및 차별적인 동기부여와 홍보 방안 마련
- 우수공무원 선정 기회 확대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식 다양화 추진

비전 **적극행정의 실현, 더 행복한 충남**

목표 **도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적극행정**

5대 추진분야 및 달성과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조성	① 전담부서와 지원부서의 협력 ②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③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④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	① 징계요구 면책제도 ② 징계 등 면책제도 ③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④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⑤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및 소송지원
-----------------------------	-----------------------------------------------------------------------------------------

소극행정 타파	① 소극행정 예방 ② 강화된 소극행정 엄정 조치 ③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④ 친절한 민원응대 문화
----------------	------------------------------------------------------------------

참여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① 적극행정 교육 실시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③ 적극행정 공무원 릴레이 추천제도 ④ 적극행정 문화 홍보 및 확산 ⑤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소통 강화
-------------------------------	------------------------------------------------------------------------------------------------------------------

Ⅲ 올해의 적극행정 추진계획

- 전담부서의 책임감 및 전문성, 인사·법무·감사·교육·혁신과제 실행부서 및 다양한 분야의 부서들이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는 적극행정
-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중점과제 수행, 우수공무원 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과 보호, 소극행정 탈피 등 적극행정 추진, 끝없는 관리와 환류를 통한 도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 구현 및 질적 향상 도모

Ⅰ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조성

① 전담부서와 지원부서의 협력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적극행정에 관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기획관(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정책기획관’을 책임관으로 지정
 -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업무 총괄 지원
 - 정책기획관 ‘혁신정책팀’에서 적극행정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
- (지원부서의 협조) 전담부서와 핵심 지원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조체계 구축

구분	부서명	추진내용
전담부서	정책기획관	적극행정 업무 총괄
지원부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면책
	인사과, 운영지원과	우수공무원 인사 우대
	인재개발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
	교육법무담당관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법률적 지원
기타	전부서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 이행

- (적극행정 추진단)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부서 합동으로 T/F성격의 ‘적극행정 추진단’ 운영
 - 적극행정책임관(단장), 담당팀장(부단장), 서무팀장, 인사팀장, 청렴 기획팀장, 공직감찰팀장 등 6명으로 구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현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
 - (지방 공공기관 적극행정 추진) 도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추진
 - 도내 13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업무 추진
 - 도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지원(요청 시) 및 추진실적 관리
 - 공공기관 내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담당팀장, 업무담당자 등 지정
- *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②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구성) 위원장 포함 15명(당연직4, 위촉직11), 간사 1명
 - 당연직 위원(4명) : 위원장(행정부지사),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회위원장
 - 위촉직 위원(11명) : 전문지식을 갖추고 자신의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자를 성별, 인지도, 실국의 추천 등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 (임기) 2020.02.01. ~ 2022.12.31. (3년, 1회 연임 가능)
 - `22년 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10월경)

- (기능)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및 의견제시
- (개최방식) 정기회의 개최(격월) 및 수시회의(안전 발생 시) 등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회의, 일부 대면(서면)회의, 온라인 영상회의 진행
 - 2개 이상 기관이 관련된 중대한 현안을 심의하는 경우 합동회의 개최 가능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원칙적으로 심의·의결 사항(안전명, 주요내용)은 충남 누리집에 공개
 - ※단,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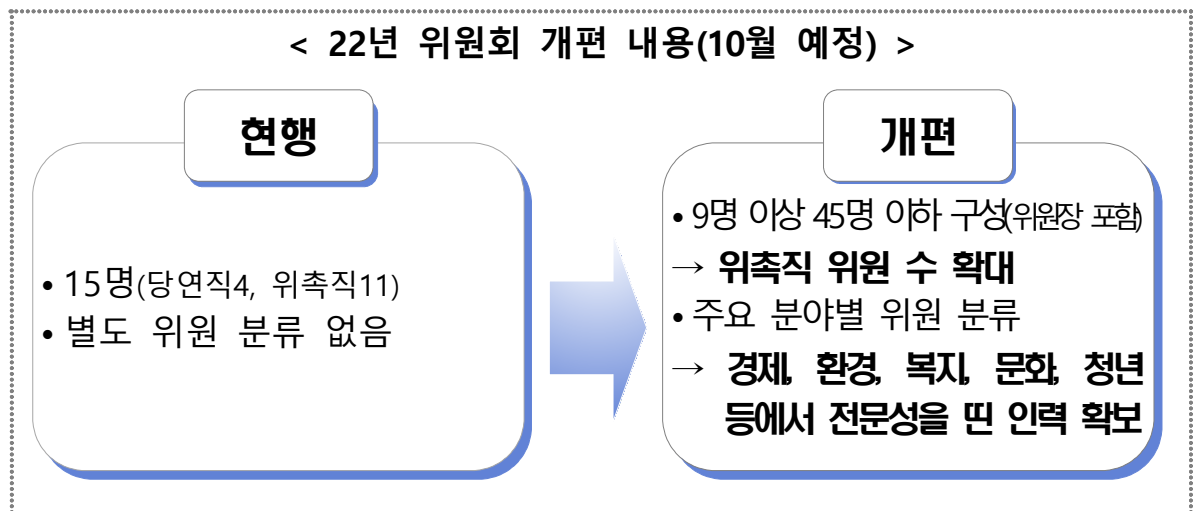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위원회에 의사결정·처리방향 등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징계 또는 면책 건의**에 대한 사항
-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의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심의**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관 집행 대행)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안전을 위임하여 처리 가능
 - 공공기관 내에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경우, 도 혹은 자체 위원회 중 선택·활용

- 공공기관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와 도 적극행정위원회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으며, 두 위원회의 결과 중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면책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필요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 (도민 의견 청취) 사안이 도내 일정 지역 및 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내부적 판단으로 필요시 관계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
-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의결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도 정책자문위원회(13개 분야, 149명)

안전소방(7)	저출산보건복지(19)	경제통상(9)	자치행정(15)	미래산업(13)
문화체육관광(20)	농림축산(12)	기후환경(12)	건설교통(14)	해양수산(8)
공보(7)	여성가족(11)	운영위(2)		

- (객관성 강화)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류별로 위촉직 위원들을 구분하고 인원수를 증가해 인력풀(Pool) 확대 예정
 - 사안에 따라 걸맞은 전문성을 띤 위원들로 구성하여 심의·의결 결과의 타당성 및 객관성 극대화
 - 대표적인 분야별로 위원들을 분류하여 전문성 강화



③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 (목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및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형 적극행정의 기본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수립
 - ‘적극행정 추진 방향 발표(국무조정실, `2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22.3.)’의 운영 절차 및 과제 반영
 - 충청남도만의 비전, 특성을 반영한 추진 과제, 고유의 조직문화, 도내 고질적인 불편 및 애로사항을 고려한 적극행정 계획 수립
- (수립) 전담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전부서의 적극행정 실행과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관련 지원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수립
- (관리) 실행계획에 따른 과제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진 시 어려운 점 및 부진한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
 - 관련 부서,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
-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의 목적)

추진분야	목적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조성	적극행정의 기초 체계를 구성하여 내실화된 충남형 적극행정 실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및 동기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소극행정 타파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높여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지양 문화 확산
참여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일귀기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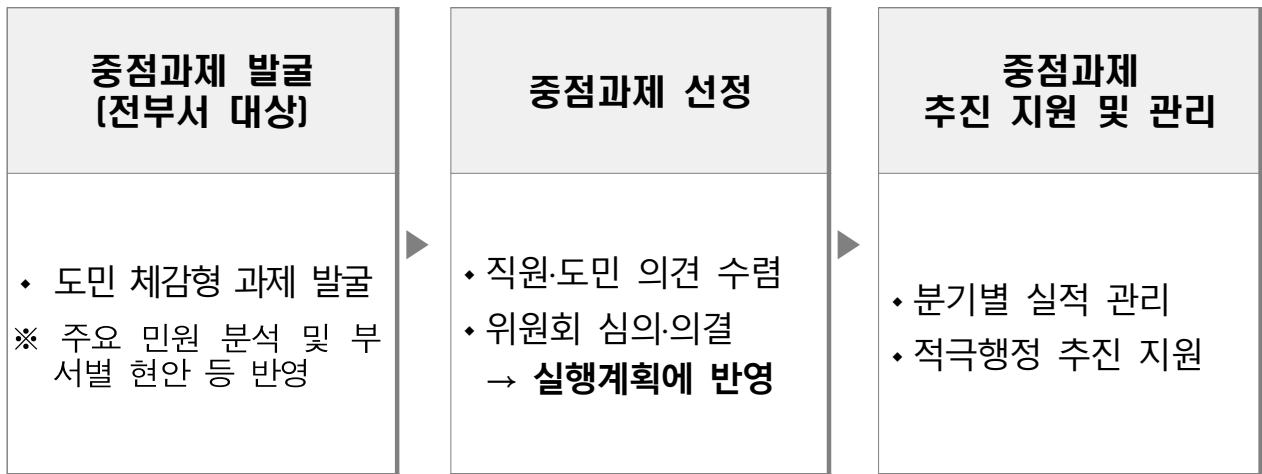
4]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 (목적) 주요 현안, 고질적 불편사항 해소,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을 창출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관리

<선정기준>
 ① 기존 업무 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②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절을 위한 과제, ③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④ 혁신적·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등 해소가 필요한 과제, 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과제 등

※ 공약 및 역점과제, 도정과제, 국정과제 우선 선정

- (선정 절차) 부서별 제출 과제에 대해 직원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5건 이내 과제 선정



- 제도 개선(불합리한 법령·지침 등 개선), 체계 개선(기존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개선), 정책 개발(새로운 행정 수요, 환경변화 선제 대응), 예방 확산(이해 충돌의 조정·해결 등) 총 4가지 분야로 분류해서 선정

- (운영계획)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 지원

- 과제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제도 및 사전컨설팅 지원
- 중점과제로 선정된 경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에 가점 부여 등 우대
-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분기별 실적 및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홍보

○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과제명(부서)	내용	목표
<p>'22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청년정책과)</p>	<p>○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전·월세 자금대출 및 이차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조건 하 저소득 직장인 및 신혼부부 포함 지원 - 은행과 협상을 통해 협약 금리 인하('21년 3.5% → '22년 3.2%) 	<p>○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670명 확대 지원 ※ 기존 계획상 500명</p>
<p>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세상소통카드 확대 운영 (여성가족정책관)</p>	<p>○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문화체험비, 진료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기존 세상소통카드 제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강화, 기준완화, 플랫폼 개선 등 	<p>○ 사용인원 : 247명 ○ 지원건수 : 2,964건 ※ '21년 대비 지원건수 1,687건(132%) 증가 목표</p>
<p>치매노인 실종수색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구조구급과)</p>	<p>○ 치매노인 조기 발견(24시간 내)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관리를 통하여 노인이 안전한 충남을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기법 고도화, 실종자 대상 배회탐지기 무상 보급 등 	<p>○ 치매 노인 실종자 24시간 이내 발견율 94.5% 달성 ※지난 3년간 발견율 : '19년 92.4%, '20년 92.9%, '21년 92.9%</p>
<p>도민 건강증진 위한 범도민 걷주 가입 추진 (체육진흥과)</p>	<p>○ 도민의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걷주' 어플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 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증설, 배너광고 및 공익광고 추진 등 	<p>○ 금년도 가입자 35만명 달성 ※'21년 가입자 : 21만명</p>
<p>빅데이터 분석 기반 교통약자(노인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감소 대책 수립 (자치경찰협력과)</p>	<p>○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환경개선(무인단속 장비 등)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 교통 사망사고 감소</p>	<p>○ 교통약자 교통 사망사고 15% 감소 ※ 어린이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p>

II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추진방향)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자긍심 및 동기부여
- (대상) 적극행정을 추진한 도 소속 전 직원
 - 일반·소방직 공무원, 공무원, 임기제, 파견 경찰 등 모든 구성원 대상
 - 부서추천을 통해 적극행정 업무 담당자*가 도내 적극행정에 기여한 경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 *적극행정 전담부서 업무, 사전컨설팅 심사, 소극행정 관리 담당자 등
 - 다수의 부서원·팀원의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달성한 경우, ‘적극행정 협업부서(팀)’으로 구성원 전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타 부서로 인사이동 했더라도 해당 업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 다수의 구성원이 적극행정 협업부서(팀)으로 신청한 경우,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우대 등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 차등 부여
- 공적 기간 내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

- (선발 규모 및 일정)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총 인원 (목표)	상반기(5~6월)	하반기(9~10월)
※ 전년도 대비 10% 증가	도민추천, 부서추천, 공무원 제안 우수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민추천, 부서추천, 소방 분야 청렴 BEST WORKER, 공무원 제안 우수자, 아름다운 도전 등
37		

○ (선발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의결

종 류	기본 절차	최종 결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하반기 1회)	부서별 사례 접수 → 서면심사(1차) → 도민 및 직원 투표(2차)	→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 결정
도민 추천	도민 추천 접수 → 적극행정추진단 심의	
부서 추천	부서 추천 접수 → 적극행정추진단 심의	
공무원 제안 우수자	우수 제안자 추천 접수 → 적극행정추진단 심의	
소방 분야 청렴 Best Worker	대상자 추천 → 소방 자체심사위원회 심의	
아름다운 도전	부서별 사례 접수 → 적극행정추진단 심의	

- 각 선발 방식별로 필요시 간단한 발표평가나 현장점검 등의 평가 진행
- 사안에 따라 알맞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구성하여 최종 결정

○ (선발요건 및 기준)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 및 갈등 해결,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규제혁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①도민·직원 체감도, ②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③중요도·난이도, ④확산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향후계획)

- 적극행정 추진성과의 우수성, 성과에 대한 기여도·노력도,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 후, 개개인의 희망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사례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9월~11월)’에 도 대표사례로 제출
- 연말 도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을 통해 공유 확산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 (대상)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우수공무원 등급 기준)

등급	내용
금	적극행정 관련 「상훈법」에 따라 훈포장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
은	적극행정 관련 경진대회에서 '장관 표창' 또는 '도지사 표창'을 받은 자
동	'부서·주민 추천', '공무원 제안 우수자', '아름다운 도전'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 (인센티브 유형)

인센티브 종류	등급			대상 직급	부여가능 규모
	금	은	동		
특별승진	○	X	X	4급 이하	초과현원 인정
특별승급	○	X	X	6급 이하 등	-
대우공무원 근무기간 단축	최대 1년	최대 6월	X	5급 이하	-
근속승진 기간 단축	최대 1년	최대 6월	X	7급 이하	-
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	○	○	○	모든 직급	최대 S등급
근평 가점 부여	최대 2점	최대 1점	최대 0.5점	5급 이하	최대 2점
특별휴가	최대 5일	최대 3일	최대 1일	모든 직급	최대 5일
해외연수 기회	○	○	○	4급 이하	예산범위 내
장기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장기교육	가점	가점	모든 직급	선발인원 내
희망부서 전보	○	○	○	5급 이하	선발인원 내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 임용 가능(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 **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3호)

- (부여 절차)

- 전담부서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등급 및 선발자의 희망 사항(택1)을 반영한 우대조치 의견을 인사위원회 등에 제시
-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및 성과,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지급

*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우선적 검토

- (기타 사항) 공무원의 경우 상금(15-50만원 이내) 및 상기 인센티브 유형에 따른 특별휴가 지급, 파견 경찰의 경우 상기 인센티브 유형에 따른 특별휴가 지급 등

1 징계요구 면책제도

- (개념)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대상)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및 감찰을 받는 기관 및 공무원 등
- (면책요건 및 제외사항)

면책대상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p>* 대상업무를 처리하며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 무사안일·직무태만의 결과인 경우 ✗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외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인 경우

- (면책종류)
 - 충청남도 종합감사 기간에는 ‘현장면책’ 신청
 - 감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
 - 감사부서에서 검토 단계 중 면책기준에 해당되는 사안을 발견한 경우 ‘직권 면책’을 통한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적극행정위원회 면책건의) 적극행정위원회가 ①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감사를 받거나, ②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시도 종합감사 및 정부합동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면책을 건의할 수 있음
 - 전담부서는 안건 제한사유 여부 검토 후 적극행정 위원회에 안건 상정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요건의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 후 면책 건의의결 시 해당 공무원 및 감사부서에 통보

○ (면책 활성화 및 확대)

- 자체감사(시군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 현장 창구 운영

- 징계요구 사실 고지 시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 감경·건의 제도* 안내

*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에 따른 징계요구시 징계감경 및 면책을 건의할 수 있음(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

② 징계 등 면책제도

○ (개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제한

- 징계 면제 외에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비위의 경우 징계감경 가능(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 (면책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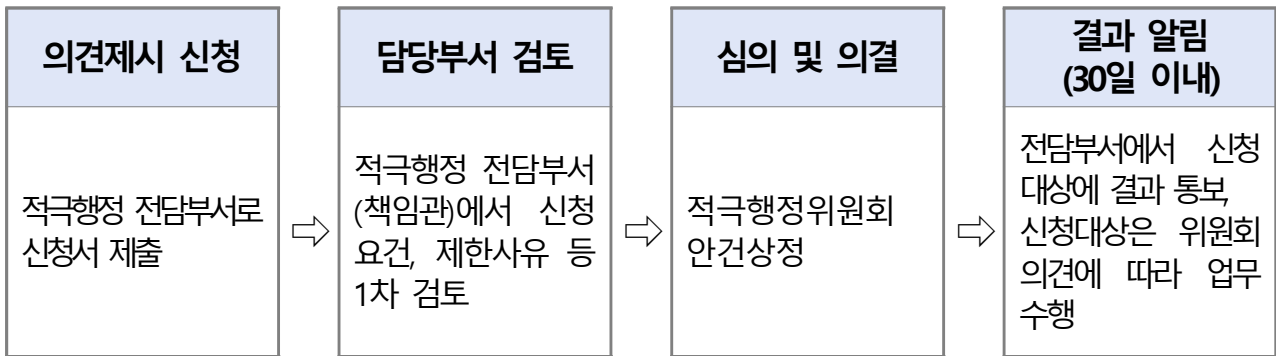
1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 (기타 징계면제 요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 및 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적극행정을 한 경우 징계면제

○ (적극행정 소명절차)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면제를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서식 마련

3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추진개요) 인가·허가 등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이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 및 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 방향에 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
- (대상) 도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소속 임직원
- (추진절차)



- 의견제시 제도 신청 시 신청 배경, 질의 사항, 심의를 위해 필요한 법령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신청
- 신청내용이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검토
 - * 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단순 민원 해소 목적인 경우, 검토가 불충분한 경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감사·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타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등
- 사전컨설팅 신청 및 답변완료가 안건 제한사유는 아니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시 해당 답변을 참고자료로 활용
- (의견제시 효과)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수행 시 책임 면제
 - 징계 등 면제 :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결 면제
 - 징계요구 등 면책 : 의견제시 사안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면책 건의 :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 (사전컨설팅과의 관계)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한 경우 답변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 사전컨설팅을 먼저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

- (합동회의) 의견제시 요청 사항 중,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합동회의 개최 가능

<심의대상>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안,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등

- 합동회의 개최요구한 기관이 '주무기관', 참여·협조 기관은 '지원기관'
-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의 담당자에게 기존의 적극행정 면책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됨

4]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 (개요)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제도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관련 규정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요청

- (대상)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체 감사 및 감찰을 받는 기관·단체·공무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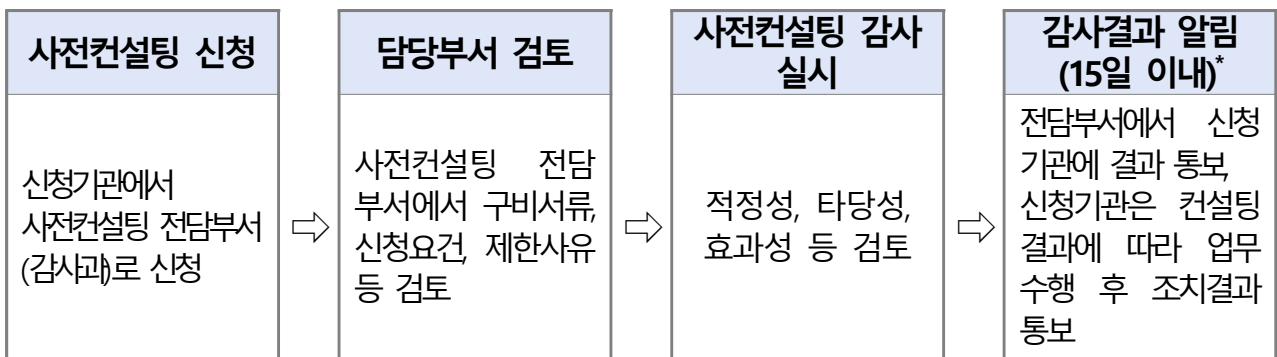
*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비를 보조받은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

- (전담기관 지정) 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팀'에서 전담

- (컨설팅 사항) 인·허가 등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사항 및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추진 사항
 - 필요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업무 한시적으로 집행 대행

<제외대상>
 △관계 법령이 명확한 경우,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또는 내부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항

○ (추진절차)



-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거나 의견조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
-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 전년도 대비 기존 30일 이내 처리 원칙을 절반으로 감축

- (효과) 사전컨설팅을 이용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책임 면제
 - ※ 단,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 (활성화)

- 일선 행정 현장의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 기본·반복적인 질문을 Q&A식으로 제공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 창구 운영
- 「시군, 출자·출연기관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지표에 사전컨설팅 실적을 반영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 수여

○ (의견제시와 사전컨설팅 비교)


구 분	위원회에 의견제시	사전 컨설팅감사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근 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2	감사원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5	지자체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5	공공감사법 시행령 §13의2
주 체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적극행정담당관	중앙행정기관장	자체감사기구의 장
신청인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자체감사대상부시장)
대 상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등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①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②법령 해석에 따른 민원 업무, ③그 밖에 규제개선 업무
제외 대상	※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외대상 설정 가능	①민원해소·책임 회피 목적인 경우 ②자체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③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확인하려는 경우 ④감사·수사·행정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①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②법령의 요건·절차가 명확한 경우 ③판례나 법령 해석이 있는 경우 ④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좌동)
효 과	자체감사 징계요구 면책 (예정), 징계등 면제	징계 요구 등 면책 징계등 면제	(좌동)	(좌동)
비 고	사전컨설팅 내용이 이해 관계가 참여하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기구 요청을 받아 의견제시 가능	중요사안은 사전 컨설팅 자문위원회의에서 안건 심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 제시가 곤란한 경우 상급 감사기구 또는 위원회로 의견 제시 신청 가능

5]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및 소송지원

- (추진배경)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상권을 자제
 - ⇒ 적극행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 필요
- (행정종합배상공제) 공무원이 공무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구분	내용
가입대상	도 소속 직원 (공무직·계약직 등 포함)
가입기간	2022.01.01.~2022.12.31. / 1년 단위 갱신
운영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종류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방어비용
보상내용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민·형사) 배상책임 ⇒ (민사) 1사고당 2억원, 연간 10억원 (형사) 1사고당 3천만원 ※ 보장횟수 제한없음 ※ 단, 고의로 생긴 손해,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외
보상절차	1. 사고접수 2. 배상금신청 3. 사고처리협의 4. 배상금지급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대리인 등 지원) 적극행정의 결과로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상 책임소송을 당하여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구분	내용						
관련근거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지원대상	도 소속 공무원 ⇒ 현재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p>변호인·소송대리인 추천 및 선임비용 지원</p> <table border="1" data-bbox="363 842 1406 1323"> <tr> <td data-bbox="363 842 595 965">형사상 고소·고발 등</td> <td data-bbox="595 842 1406 965">(비용지원) 500만원 이하 범위 내 ※ 단,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함</td> </tr> <tr> <td data-bbox="363 965 595 1205">민사상 책임소송</td> <td data-bbox="595 965 1406 1205">(비용지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변호사·소송대리인 지원)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자문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 추천</td> </tr> <tr> <td data-bbox="363 1205 595 1323">징계 절차</td> <td data-bbox="595 1205 1406 1323">(비용지원) 200만원 이하 범위 내</td> </tr> </table>	형사상 고소·고발 등	(비용지원) 500만원 이하 범위 내 ※ 단,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함	민사상 책임소송	(비용지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변호사·소송대리인 지원)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자문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 추천	징계 절차	(비용지원) 200만원 이하 범위 내
형사상 고소·고발 등	(비용지원) 500만원 이하 범위 내 ※ 단,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함						
민사상 책임소송	(비용지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변호사·소송대리인 지원)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자문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 추천						
징계 절차	(비용지원) 200만원 이하 범위 내						
지원절차	 <p>☑ 감사부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p> <p>※ 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및 징계 절차에서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지원 결정 취소 가능</p>						

1 소극행정 예방

- (소극행정 개념)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태만과 같은 소극적 업무행태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 및 공익을 침해하거나 지자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유형	행위	개념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①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 또는 지연
	② 업무 규정 미숙지	담당업무 관련내용 미숙지로 피해 발생
	③ 업무 떠넘기기	부서·기관 간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처리 거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	④ 무성의한 업무처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행위
	⑤ 절차 만능주의	절차 우선 서류양식에 집착, 불필요한 신규절차를 마련해 국민불편 초래 및 행정목적 미달성
	⑥ 불충분한 설명	제도·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행위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의한 일처리 행태	⑦ 조직우선·부담전가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조직의 이익이나 편의를 추구하고 불필요한 부담 요구
	⑧ 관료 개인 편익우선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해결대안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공무원이 편한 방식으로 일 처리
	⑨ 불합리한 관행답습	보다 효율적·적절한 방법이 있음에도 변화 상황을 외면, 과거 방식대로만 단순 처리

- (추진개요) 소극행정의 근절·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소극행정 행태를 집중점검하고 부조리 사례를 적발 및 개선·시정
- (점검사항) 상기 유형의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의한 일처리 행태 등
- (점검방법) 반기별 자체적인 특별점검 실시 및 공직기강 감찰·연휴 특별 감찰 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점검을 병행

2 강화된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조치방법)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따른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 6개월 가산 및 타 직위 전보,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등 인사조치
 - 소극행정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자는 포상·해외연수대상자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등 인사 관리에 불이익 가능
- ※ 소극행정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하여 관리책임 강화

○ (징계양정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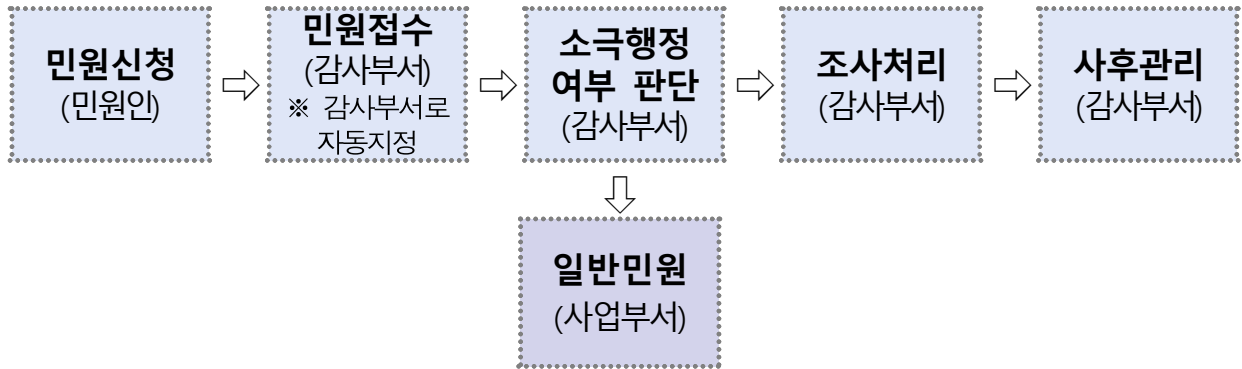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지무태만(소극행정 제외)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후속조치) 소극행정 점검결과 및 적발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엄정 조치
 - 결과에 따른 악성·상습 사례를 유형화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사례 공유를 통해 경각심 고취
 - 최근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수감기관 공통 지적사항 등에 대해 제도적·기술적으로 보완하여 소극행정의 적극행정으로 전환 추구
 - 법령·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각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3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개요)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과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처리절차)



○ (세부절차)

① 소극행정 민원 신청

- 민원인이 소관 기관을 지정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

② 소관부서로 접수 및 검토

- 감사위원회에서 접수 후 검토하여 소극행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을 직접 처리

- 검토 결과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 각호(단순 진정 및 불만 표시 민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부서로 재지정

③ 소극행정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조사 결과 민원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및 처분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등 조치 후 처리결과 통보

※ 일반적으로 14일, 현장조사 등 필요 사안은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④ 사후관리

- 국민신문고에 처리결과(감사부서 처리 여부, 소극행정 해당 여부 등) 입력

-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소극행정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민원인이 소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고 여길 경우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신고 사항 검토 후, 감독기관 또는 소관기관에게 재조사 및 업무처리 개선 등 권고
 - ⇒ 소관기관 또는 상급기관 감사부서는 권익위의 의견에 따라 재조사 및 개선조치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기타 사항) 소극행정 신고 처리 매뉴얼 및 관련 민원답변 가이드에 준하여 답변하며,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미처리 사유 기재

4 친절한 민원응대 문화

- (배경) 전 부서에 민원 응대 요령 등을 안내하여 바람직한 민원응대 문화 조성
 - 인·허가 등 거부시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법적근거와 답변 사유, 권리 구제 절차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복합민원의 경우엔 관련 협조부서의 검토의견,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

<구제절차 고지문 예시> ※ 2021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참조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화친절도 조사) 상·하반기 전화 민원 응대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

1] 적극행정 교육 실시

- (개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지원제도 및 적극행정 사례 안내 등 직장교육 실시
- (일시)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 (인재개발원) 도·시군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운영
 - 전국 단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실무자 및 수상자를 중심으로 인력풀 활용
 - 「공직자 적극행정 과정」을 국·도정 핵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 적극행정의 이해, 다함께 적극행정,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쉬운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 등 온라인 교육 실시
- (활성화) ‘기관지정학습’으로 선정하여 직원들 교육 이수 독려
- (기관장의 참여) (부)단체장이 직원들과 함께 적극행정 교육에 참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및 독려
 -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교육 또는 대면교육 실시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개요) 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본청, 시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및 전파
- (일시) 하반기 1회(9월 예정)
- (대회 절차) 부서 및 기관별 사례 접수 → 서면심사(1차) → 도민 및 직원 투표(2차) →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필요시 발표 및 현장평가 시행
- (우대사항)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및 상장
- (성과 확산) 선정된 우수사례를 리플렛·인포그래픽·포스터 등 홍보물로 제작하여 전 부서 공유 및 청내 오프라인 전시
 - 범정부 경진대회 입상사례는 행안부 및 지자체 공동·연계 홍보 참여

③ 적극행정 공무원 릴레이 추천제도

- (추진방향)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릴레이로 추천·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도모
 - ※ '20년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릴레이」 시작, '21년말 기준 총 51명 선정
- (추천대상) 과장급 이하 전 직원 중 적극행정을 추진한 자

<추천기준>

-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 ✓ 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

<제외기준>

- ✗ 동일 실·국 추천 연속 2회 초과인 경우
- ✗ 추천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추천방식) 격주에 1명씩 릴레이로 추천
 -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추천자에 대한 ‘추천서’를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제출하고, 전담부서에서 선정요건 검토 후 대상자로 결정
- (인센티브) 충남 행정포털 메인화면 추천내용 게시 및 부상 제공
- (기관장의 독려) 매월 초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부)단체장이 릴레이 추천에 선정된 공무원들의 주요 공적에 대하여 칭찬하고 사례 전파

공지사항

제목 [2주의 적극행정 공무원 - 추천릴레이 48번째] - 김현민 주무관 조회 수 559

작성자 이준일 / 정책기획관 작성일 2021-11-10 11:13 작성자메일

게시 옵션

2주의 적극행정 공무원

대상자

내 容	추천시기	2021년 48번째			
	추천대상자	성명	김현민	부서	소장공기업과
		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직위	주무관
	추천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시골연대), 경영연(태), 기타 공모사업 등) * 전통시장 상인회 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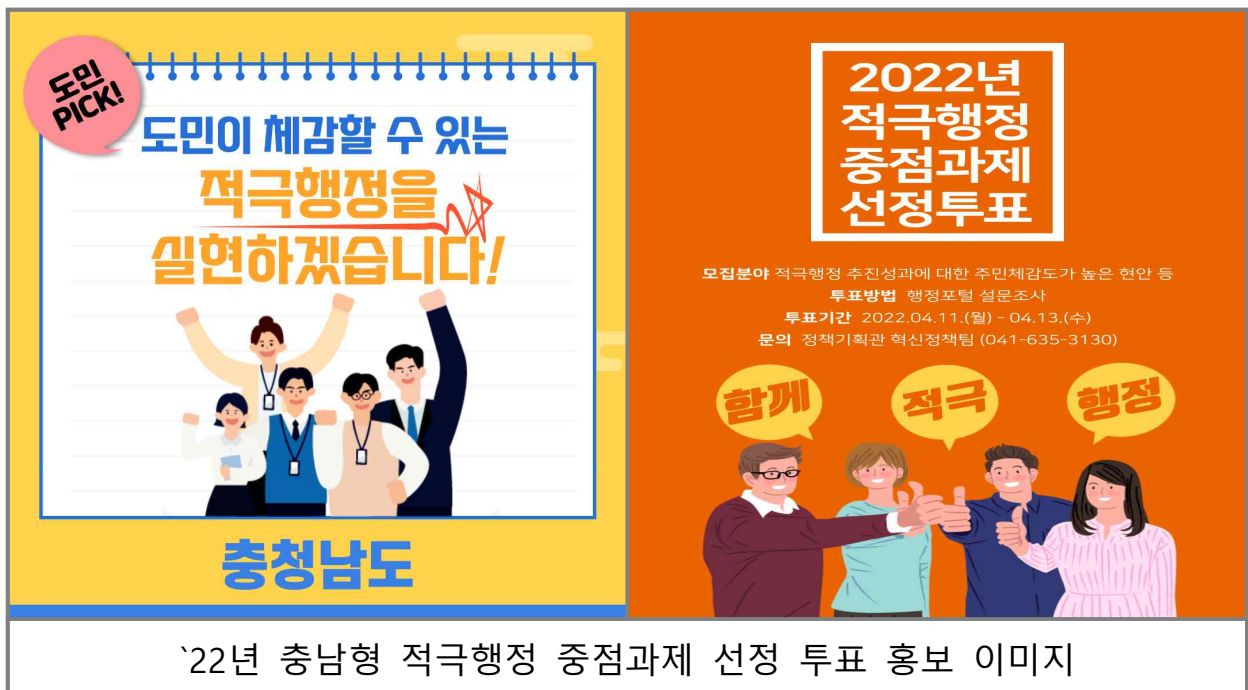
[2주의 적극행정 공무원 - 추천릴레이 48번째] - 김현민 주무관
 ○ '2주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된 분께는 부상으로 무선 이어폰이 제공됩니다.
 ○ 다음 '2주의 적극행정 공무원'은 백미애 주무관의 추천으로 2021.11.22.(일) 게시됩니다.
 ※ '2주의 적극행정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추천하고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고자 격주에 한 명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릴레이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중요게시물성명 [설정](#) [알림](#) [경우](#) [\[중요게시물\]에 보기](#)

* 충청남도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주요 공적 등 게시

4] 적극행정 문화 홍보 및 확산

- (배경) 충남형 적극행정에 대해 홍보하여 도민들에게 적극행정에 대해 알리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 (직원 대상 홍보) 직원들에게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 제도 등 지원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스터 및 전광판 등을 충남 행정포털과 청사 내 게시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도민 대상 홍보) 도민들에게 충청남도 적극행정 현황을 알리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제도 및 이벤트* 홍보
 - *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충남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 적극행정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들을 활용한 홍보콘텐츠(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도 누리집 적극행정 코너 및 적극행정 온(ON)에 게시



'22년 충남형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투표 홍보 이미지

-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 서로 다른 분야의 기관 및 부서, 연령대가 다른 세대의 소통을 통해 기존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적극행정을 실현

구분	내용
행정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 협업 포인트 및 협업 이음터 참여 유도 ※ 특별 협업포인트 사례 중 우수한 내용을 모아 홍보물 제작·배포 - 협업 지원 애로사항에 대한 조정 및 해결 지원
지식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한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연구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식동아리 운영 ※ '22년 총 19개 지식동아리 운영비 등 지원 ※ 적극행정을 주제로 동아리원 간 토론 등 시행 요청
토론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성의 장점을 살려 건전한 비판문화를 조성하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담당자를 지정 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 적극행정 관련 익명 사례 파악·분석

- 그 밖에 팀별·부서별 소통 간담회를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연가 등 휴가, 유연근무제 자율 시행 등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의 만족도와 사기 증진을 통해 적극행정 유도

-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독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및 도 소속 공공기관도 적극행정의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의욕 넘치는 적극행정 추진 유도

- 적극행정 실행계획 관련 성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홍보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 후 **도지사 기관표창** 수여 ※ `22년 선정 규모 : 6곳(기초지자체 4, 공공기관 2)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과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기타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어려운 점 및 바라는 점, 개선할 점 등 의견 수렴

5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소통 강화

- (개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소통 방안 마련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해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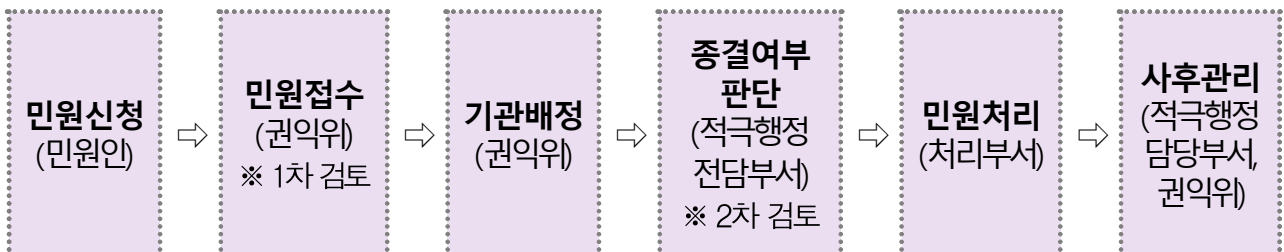
< 신청요건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 >

-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 타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이미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반려된 사안
- ✓ ① 법령미비 또는 ②법령불명확 사유로 반려된 사안

< 제외사항 :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 >

-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
-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관련된 경우
-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 판결, 재결 등으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인 경우
-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활성화를 위해 도 누리집 및 SNS 등을 이용하여 관련 요건 및 규정 신청 방법 등 적극적으로 홍보
-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요청 가능
- 추진체계도 ※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에서 접수·검토 후 소관부서 배정



-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도민들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직접 칭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행정 동기부여

< 추천대상 >

-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 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킨 우수 공무원 또는 우수정책
- ※ 단순히 친절하게 민원에 대응한 사례나 공익에 맞지 않는 사례 등은 소관 부서 판단하에 추천대상에서 제외

- 도민들이 충청남도 누리집* 혹은 적극행정 온(on) ‘적극행정 국민추천’ 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추천
 - ※ 충청남도 누리집 내 적극행정 페이지에 국민추천제 별도 페이지 운영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점 부여
 - ※ 추천사유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 확보
- 추천사례를 요약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시 및 전 부서에 공유

- (기타 적극행정 도민 참여) 적극행정 계획 수립부터 최종 평가까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도민체감도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발, 실행계획 수립 시 중점과제 선정 등 도민의 참여 창구 확대
 - ※ 만사형통충남 및 광화문1번가를 이용한 설문조사 시행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적극행정 추진현황 홍보 시 댓글 등 도민의 반응을 추진 방향에 반영
 - ※ SNS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

Ⅲ 향후계획 및 관련 예산

Ⅰ 향후 계획

-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충청남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제출
 - 본청·사업소·직속기관 등 전 부서 대상 적극행정 실행계획 공유
 - 15개 시군 실행계획 평가 후 결과보고서 제출(6월말)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실행계획·중점과제 및 우수공무원 선정, 의견제시 제도 심의·의결 등 수시 개최(정기적으로 개최 예정)
- (적극행정 실행과제 점검) 선정된 중점과제 및 실행과제 추진상황 수시점검
 - 추진 시 부진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즉각적으로 해결
-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상·하반기)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하반기)
- (적극행정 교육 시행) 적극행정 직장교육 및 관련 사이버교육 실시
- (적극행정 포상) 시군 및 공공기관 대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후 도지사 기관표창 수여(연말)

Ⅱ 2022년 적극행정 관련 예산

예산과목	내용	예산액(단위:천원)	비고
합계		39,000	
일반운영비 (201-01)	적극행정위원회 개최(참석수당 등)	13,350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등 개최	1,48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6,060	
	적극행정 홍보	13,110	
포상금 (303-01)	적극행정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포상	5,000	

III

주요 일정 및 부서

추진 분야 및 과제	일정	관련(협조) 부서
1.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조성		
○ 전담부서와 지원부서의 협력	연중	전 부서
- 적극행정 추진단 운영	수시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감사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정기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위원회 확대(분야별 위촉·재위촉)	10월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5월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연중	전 부서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4월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중점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정책기획관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5월, 9월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반기별	인사과, 운영지원과, 소방청령과, 자치경찰협력과
3.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		
○ 징계요구 면책제도	연중	감사위원회
○ 징계 등 면책제도	연중	인사과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연중	정책기획관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연중	감사과
○ 적극행정공무원 법률 및 소송지원	연중	세정과, 교육법무담당관
4. 소극행정 타파		
○ 소극행정 예방	연중	감사위원회
- 소극행정 특별점검	반기별	감사위원회
○ 강화된 소극행정 엄정 조치	연중	감사위원회, 인사과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연중	감사위원회
○ 친절한 민원응대 문화	연중	정책기획관
- 전화친절도 조사	5월, 8월	자치행정과
5. 참여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 적극행정 교육 실시	반기별	인사과, 인재개발원
- (부)단체장의 적극행정 교육 참여	하반기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9월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공무원 릴레이 추천제도	격주 1회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문화 홍보 및 확산	연중	정책기획관, 공보관
○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소통 강화	연중	정책기획관, 감사위원회, 공보관